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32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 ~ 21

□ 담당부처 :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02-2110-5512)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개정사유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설비 공급능력 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함.

- ②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둠.
- ③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함.
- ④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53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5 ~ 2007. 1. 4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2110-8541~53)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dt.go.kr)

* 개정사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택지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합리화

- ①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 ②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③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산정기준합리화

- 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②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③ 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54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9 ~ 2007. 1. 10

□ 담당부처 : 산업자원부 안전정책팀 (02-509-7238~41)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개정사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 법령과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
- ② 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률 : 건설교통부 제2006-457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9 ~ 2007. 1. 12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 (02-2110-8790)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개정사유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등급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달리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며, 정밀점검 결과에 대하여도 그 부실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단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설립근거를 두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조의2),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②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제한함.
- ③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점검도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④ 법 제16조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⑤ 시설물 보수·보강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보수·보강기술의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제를 도입함.
- ⑥ 한국시설안전공단단의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수·보강기술 인증사업 등 공적기능을 추가함.
- ⑦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설립근거를 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 령 : 노동부 제2006-221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12. 29 ~ 2007. 1. 18

□ 담당부처 :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87~8)

□ 전문참고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개정사유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②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으로 변경함.
- ③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가. 응시자격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확대

- ①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함.
- ②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재직기간,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함.
- ③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및 검정방법 지정

- ① 일부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격과 산업현장간의 괴리가 발생함.
- ② 도시계획기사의 시험과목 및 화학분석기사의 검정방법을 변경하고 의공기사 등 3개 신설 종목의 검정방법을 지정함.
- ③ 해당 종목과 관련된 산업현장 직무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행위의 기준 강화 및 수험자 지참 금지물품 지정

-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함.
- ②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사용하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하고, 지참금지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함.
- ③ 수험자 지참금지 물품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개선사항

- ① 검정시행방식의 개선에 따라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을 조정함.
- ② 필기시험 감독위원 등 시험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중 미비사항을 보완함.
- ③ 수험원서 전산화에 따라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험원서 서식을 개선함.
- ④ 산업현장 실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기준의 서술체계를 개선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변경

- ①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PQ고시 적용대상 금액 변경안내

- 「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재정경제부장관)금액 이상의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작성·공고하고, PQ기준에 따라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집행계획을 작

성·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 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고시	재정경제부고시2004-26호 (2004.12.31)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8호 (2006.12.29)
금액	2억 1천만원	1억 9천만원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내용안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령 : 건설교통부 제2006-454호

□ 입법예고기간: 2006. 12. 14 ~ 2007. 1. 3

□ 담당부처 :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 (02-2110-8594)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akr)

* 개정사유

-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 9.27. 공포, 2007. 3.28.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에 대한 정의 신설,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또한 불법적인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대무기간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방법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년이상 연체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것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므로 “부도 등”의 정의에 포함하고자함.
- ② 부도 등을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포

함)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

- ③ 임대무기간 전에 임대주택 매각 시 “경제적 사정”으로 매각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 ④ 부도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도사업장을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 ⑤ 무분별한 임차권 양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양도 등의 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 ⑥ “부도임대주택 등”에 시장 등의 실태조사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⑦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⑧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로 상향 조정
- 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선정관련 평가방법(보충자료) 안내

1. 법적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 법 제2조제8항·제9항 및 부칙 제 항·제2항
-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의4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자부고시 제2006-107호, '06.10.26)

- 제24조제2항(감리대가의 산출)
-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제2항 및 제4항제2호
- 별표2의2(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자부고시 제2006-69호, '06.7.5)

-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선정평가 참고자료

■ 개발실적 평가관련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법 제2조제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등 개발실적 평가는 감리업체 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최초 출원자(업체 또는 대표자)와 최초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 함은 출원자(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출원권을 매입(투자)하여 최초 특허권자가 된 경

우에는 개발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투자실적으로 인정

-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등이 있음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① 지역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② 상훈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감사장(패), 공로장(패))은 제외를 받은 경우 1.5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0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자·시·도지사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0.7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0점
	③ 교육훈련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④ 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차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① 지역가점

- 공동주택 세대수가 80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평가함
- 주된 사무소는 감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로 확인함

② 상훈가점

-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모집공일 기준) 공사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인정
 - 공사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용역을 말하며,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공사감리용역 수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
 - 공적조서 등에 타 분야 업무가 혼합·기재된 경우라도 전기공사감리용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
 - 발주자는 법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자를 말하며(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함. 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인정 가능
 - 감리업체 대표자가 업체명의로 개인명의로 각각 상훈을 받은 경우, 상훈의 주체가 “귀사”인 때에는 업체로 “귀하”인 때에는 개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개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1개 표창에 한하여 가점

* 감사장·패, 공로장·패는 평가에서 제외

③ 교육훈련 가점

- 참여감리원이 모집공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 협회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말하고, 전기설계 또는 건설감리 등의 교육훈련은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이수기간은 최근 3년간의 교육기간을 합산

④ 책임감리원 가점

- 책임감리원이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가점. 자격은 감리원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인이 2

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 1개만 인정(자격정지 등은 평가제외)

자격종목	자격분류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전기기기)와 전기공사 통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동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호)

■ 감리업자 평가기준 조정 가능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2호〔별표 1의4〕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감리업자 선정통보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통보(참여감리원 현황포함)

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연락처

구분	관련부서명	연락처
①모집공고 의뢰	제도연구실	T. 02)2182-0710~4 F. 02)581-4257
②사실조회	민원봉사실	T. 02)2182-0741~3 F. 02)581-4258
③감리업자 선정통보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건축물 등 신축공사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시 공사현장은 울타리 등으로 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건축물 또는 전기설비의 시공자가 동 건설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공사의 도급에 관한 계약서상에도 건축물 또는 전기설비 등의 완공 후 인도날짜 등이 명시되어있는 바, 시공자를 점유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02 기존 건축물 등의 변경공사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변경공사시에도 전기설비의 시공자가 시공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점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설비의 원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변경공사현장에 거주 또는 근무 등을 하고 있다면, 시공자를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03 만약 위 “가 또는 나”를 점유자로 볼 수 있다면, 원도급자(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도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의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하수급인은 전기공사의 일부분을 하수급하며, 이 경우에도 원수급인의 지도·조정을 받으므로 전기설비의 점유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04

만약 위 “가, 나, 다”를 점유자로 볼 수 있다면 선임신고서류로 공사를 도급받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사도급계약서 등)를 징구하여야 되는지 여부 ? !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73조의2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해임한 자는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증빙을 위하여 귀 협회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5

저압 75kW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혼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 ? !

??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면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75kW이상일 경우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06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상가가 동일소유자(주택공사)이고 한울타리 안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나, 수전점이 다를때 한사람의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소유의 전기설비가 동일사업장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